집회·시위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갖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자 1
1. 집회 · 시위 개관 4
1.1. 집회 · 시위 개요 4
1.1.1. 집회(시위)란? 4
1.2. 집회 · 시위 관련 법령 5
1.2.1. 집회(시위) 관련 법령 5
2. 집회 · 시위의 일반적 방법 7
2.1. 개최 7
2.1.1.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7
2.1.2.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10
2.1.3.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15
2.2. 관리(진행) 17
2.2.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17
2.2.2.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20
2.2.3.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22
3. 선거 · 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25
3.1. 공직선거운동 관련 25
3.1.1.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25
3.1.2. 연설 · 대담 · 토론회 등의 제한 28
3.2. 국민투표운동 관련 32
3.2.1.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제한 32
3.2.2.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 · 대담 34
3.3. 주민투표운동 관련 35
3.3.1.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35
3.3.2.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37

1. 집회 · 시위 개관

1.1. 집회 · 시위 개요

1.1.1. 집회(시위)란?

집회 및 시위의 개념

집회의 개념

▪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 **옥외집회란?**
>
>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위의 개념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제한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

▪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개최, 진행, 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 그 밖에도 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1.2. 집회 · 시위 관련 법령

1.2.1. 집회(시위) 관련 법령

일반적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금지되는 집회·시위의 목적,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옥외집회·시위의 신고,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집회·시위의 해산(명령),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 등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시 점용허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서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장애인복지법」 제1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의 제공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등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며(「보안관찰법」 제1조), 이를 위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이를 위해 집회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 「대한민국국기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서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며(「대한민국국기법」 제1조), 집회에서 국기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투표운동을 위한 집회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공직선거법」 제1조), 이를 위해 연설·대담의 개최 방법, 시기·주체·장소 및 방법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통일이나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국민투표법」 제1조), 이를 위해 옥내모임에서의 연설·대담, 연설회 등 집회 개최 및 확성장치·자동차 사용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주민투표법」 제1조), 이를 위해 연설금지장소, 확성장치·자동차의 사용제한, 야간옥외집회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집회 · 시위의 일반적 방법

2.1. 개최

2.1.1.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목적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위반 시 제재

▪ ① 이를 위반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시간의 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시간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 옥외집회란?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옥외집회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다만,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및 제23조제1호 중 "옥외집회" 부분은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별도의 개정시까지 법률의 효력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2008헌가25 결정 참조).

장소의 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유용한 법령정보 I :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시 점용 허가

◎ 도시공원이란?

▶ 도시공원이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도시공원 내 집회를 위한 단기(短期) 가설(假設)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허가

▶ 도시공원 안에서 집회를 위해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호 및 제3호).

참고: 옥외집회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금지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2.1.2.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함)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신고장소”라 함)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장소란?

   ▶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주변지역이란?

   ▶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내용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 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II :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이의신청인은 ①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②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위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한 사유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삼보일배 행진

<시위의 방법으로 삼보일배 행진이 위법한지 여부>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속도가 느려져 다른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삼보일배 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고, 시위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점은 법률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위로 인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불과하여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고)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참고 :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

5. 집회 또는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 질서유지선이란?

▶ 질서유지선이란 관할경찰관서장이 적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서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

▪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호).

집회와 수인의무, 정당행위

Q. 집회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나요?
A.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이러한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고).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

제한 사유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시행하는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집회 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명령 또는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위 명령 또는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참고: 옥외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2.1.3.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양식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인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시위의 대형

나. 차량, 확성기, 입간판이나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數)

다. 구호 제창의 여부

라.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마.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바.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사.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신고기관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접수증 교부

▪ 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접수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받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신고서의 보완 통고

▪ 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되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되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집회의 신고

< 집회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 옥외 집회 및 시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신고 없이 집회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고,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집회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집회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찰서에서 이미 집회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옥외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고).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서에 적힌 집회 또는 시위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와 시간·장소가 중복되어 금지 통고를 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해당 미개최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5항).

참고: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신고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2.2. 관리(진행)

2.2.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주최자란?**

▶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에서 주최자로 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질서유지인이란?**

▶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주최자의 준수사항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해서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이를 위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옥외 참가 유발행위 금지

▪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질서유지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참가자의 준수사항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군인·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화염병 사용 등 금지

▪ 화염병 사용 금지

▹ 화염병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 화염병이란?**
>
> ·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염병 등 제조·보관·운반 및 소지 금지

▹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하거나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 의무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집회장소에서의 추행 금지

▪ 집회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국기(國旗)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은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2.2.2.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금지되는 집회·시위의 목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옥외집회·시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집회·시위)에 따른 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야간 옥외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따른 조건을 위반해서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가.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해산명령에 따른 조치

해산 의무

▪ 집회 또는 시위가 위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한 경우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결정).
>
> 이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참고: 해산의 절차

◈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해서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②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1.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2.의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2.2.3.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집회 또는 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 표시·설치 제한의 적용 배제

▪ ①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로서 ② 비영리 목적이고 ③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이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디지털광고물이란?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게시시설이란?

▶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점자자료 등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폭행·협박 등의 금지

▪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군인·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정인 참가의 배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한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 이를 위반해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

참고: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피보안관찰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해서 피보안관찰자가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

불법집회 또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사용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조치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범위

▪ 경찰관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탄 등의 작용제를 포함)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의 사용 범위

▪ 경찰관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 범위

▪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 또한,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살수차의 사용 기준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1항).

-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 경찰관은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하며,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2항).

▪ 경찰관은 살수하는 것으로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3항).

3. 선거 · 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3.1. 공직선거운동 관련

3.1.1.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로 전송하는 행위

시기의 제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및 예외

▪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함)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제2호 단서 포함)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와 사조직의 설치·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주체의 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4.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
2.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함)

>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과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8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8.2.22. 선고, 2015헌바124 결정).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4항).

> **※ 활동보조인**
>
>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
>
>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
>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장애인
>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방법의 제한: 불공정한 집회의 제한

선거기간 중 특정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 위 사항을 위반해서 모임을 개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제4호).

선거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 및 반상회의 개최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4항).

▸ 위 사항을 위반해서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3.1.2. 연설 · 대담 · 토론회 등의 제한

연설·대담 주체의 제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연설·대담 시간의 제한

제한시간

▪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본문).

▪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

▪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사람(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제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10호).

▪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시간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연설·대담 장소의 제한

제한장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나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됩니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와 그 밖의 의료·연구시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6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3항).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0조).

▪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해서 확성장치나 자동차·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연설·대담 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 대수 및 표시방법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1.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 위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9호의3 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4조의 선거벽보, 「공직선거법」 제65조의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 표지는 표지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①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②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 확성장치의 사용방법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5항).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7항).

▪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 확성장치의 소음기준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제1호).

▹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제2호).

※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제한

▪ 정당 또는 후보자 홍보목적 외 방송·방영제한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9호의3 양식에 따른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 표지는 표지교부신청서에 따라 ①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②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다목).

연설회에서의 소란행위 등 금지

금지행위

▪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4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타목).

행렬 등의 금지

금지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서 10명)을 초과해서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어깨띠나 윗옷(상의)·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해서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제16호).

참고: 당원집회의 제한

<시기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기간의 제한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당원집회"라 함)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무(黨務)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장소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 신고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최 의무

▶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개최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당원집회신고를 한 후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나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제1항).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방법의 제한>

◎ 당원집회 표지의 첩부·게시 및 집회종료 후 철거 의무

▶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貼付: 발라서 붙임) 또는 게시해야 하며, 개최자는 해당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그 밖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면 해당 당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 또한, 집회종료 후에 해당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3.2. 국민투표운동 관련

3.2.1.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제한

※ 국민투표운동이란?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국민투표법」 제22조).

주체의 제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24조).

- 「국민투표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은 제외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국민투표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449호, 2026. 3. 6. 개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국민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4조제4항제2호).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2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그 조합의 중앙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국민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4조제4항제2호).

3.2.2.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대담

옥내모임에서의 연설·대담

옥내모임 연설·대담의 실시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28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방송시설 연설의 실시

▪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설원을 지명하여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연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합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1항 후단).

▪ 연설은 정당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10회(재방송을 포함함. 이하 같음)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봅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2항 후단).

방송시설 연설의 신고

▪ 정당은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 이용일시, 연설원의 성명, 소요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연설신고서[「국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나)]를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투표법」 제31조제4항, 제8항 및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제3항제1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5조제3항 및 별표 2제3호).

- 방송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매 1일마다 100만원

연설·대담 실시 시 준수사항

대담·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국민투표법」에 따른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

▪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4조제5항제6호).

연설원 폭행 등 국민투표자유방해의 금지

▪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96조제1항).

- 투표인·연설원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람
-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연설원을 폭행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국민투표법」 제96조제3항).

- 주모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무기·흉기 등의 휴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06조제2항).

3.3. 주민투표운동 관련

3.3.1.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 주민투표운동이란?**
>
> ▶ 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주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시기의 제한

주민투표운동기간

▪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주체의 제한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2항).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 주민투표권**
>
> · 18세 이상의 주민 중 「주민투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본문).
>
> 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단서).

2.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통·리·반의 장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3.3.2.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집회 시간의 제한

야간옥외집회 금지

▪ 누구든지 야간옥외집회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 각 지역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집회 장소의 제한

연설금지장소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